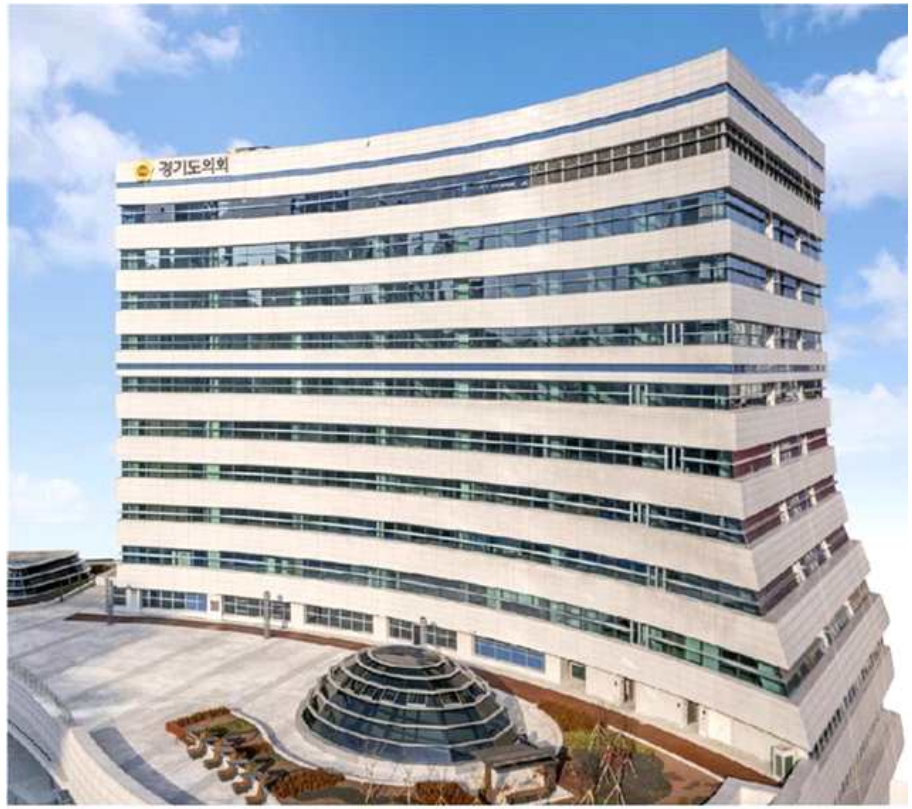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월간 입법동향

- 2026년 11월호 -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 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개 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 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
2. [제 정]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

□ 국회 입법연구

1. [NARS 현안분석] 학교용지 토양오염관리의 개선과제
 기존 학교부지 증축·개축 단계의 토양오염 확인-비용부담-기록을 중심으로
2. [NARS info]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결국 사회로 돌아올 소년범들을 위한 교화체계 내실화

□ 국외 입법동향

1. [대 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2. [러시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
3. [독 일]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데이터 센터 건설 규제 입법사례 •

1. [미국 아이언] 데이터센터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2. [미국 프린스윌리엄] 데이터센터 중첩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3. [미국 칼버트] 데이터센터 산업 토지용도 지역 조례

□ 주요 판례

◇ [대법원]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5건 (광역시·도 1건 / 기초 시·군·구 4건)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제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7. 9. 9.] [법률 제21901호, 2026. 9. 8., 제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 제정이유

2024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고,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위험 등으로 주변 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와 인구감소를 유발하여 지방소멸의 원인이 됨.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 법령이 운용되고 있으나,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현황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임.

이에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공동화를 유발하는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

차.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안전조치·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관리 등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

타. 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

파.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5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이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은 여러 법률과 특별법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빈 건축물 및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을 통·폐합하여 정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임.

○ 경기도의 빈집은 2025년 기준 5,799호이며, 고령화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경기도 역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쇠퇴 및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신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률 제4조 및 제16조는 도지사에게 빈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전략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빈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40조는 빈 건축물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제5조제1항제3조는 빈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주변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신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존 조례와의 관계 및 위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지사의 전략계획 수립·시행과 전담조직 설치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빈 점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빈 점포의 수·위치·공실 기간 등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의2 제2항제4호 신설)

나. 빈 점포를 교육·문화 프로그램, 고객편의시설,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이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 점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빈 점포 현황을 포함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임.

○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중소 점포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도 도심 점포를 폐점하거나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업시설의 유휴화와 주변 상권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역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상업지역 내 공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상생협약 체결 지원 및 재난피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지역상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실 문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제4호는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할 때 빈 점포의 수·위치·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30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를 행사공간·편의시설·창업공간 및 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는 공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례와 상위법에서 새롭게 위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빈 점포 활용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

[시행 2026. 10. 8.] [조례 제6027호, 2026. 10. 8., 제정]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보급 및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추어 도내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관광·교육·콘텐츠 산업과 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 있다고 사료됨.

◇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문화유산 공공정보의 개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동연구와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연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자. 취약계층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추어 역사·문화유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관광·교육·콘텐츠 사업과 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콘텐츠의 개발·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문화유산분야의 디지털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율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4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의무와 공공정보 이용촉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보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주요내용은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콘텐츠 제작사업 지원, △플랫폼 구축과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및 위탁, △취약계층의 접근지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경기도 역시 상당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관광·교육·콘텐츠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디지털콘텐츠 이용에 있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정] 충청남도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 조례

[시행 2026. 4. 23] [조례 제6128호, 2026. 4. 23., 제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정이유

○ 과거 농업·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다수 존재하나,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 안전성 저하, 미관 훼손 및 범죄·사고 발생 우려 등 공공 안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고령화 등 지역 여건상 주민 자력에 의한 정비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미사용 공공창고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미사용 공공창고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미사용 공공창고 철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과거 농업 및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우려, 미관 저해 및 범죄 발생 가능성 등 공공 안전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인 정비와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경기도 역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지 오래되거나, 미사용인 채로 방치된 공공창고가 있어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 및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음.

○ 다만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철거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 비용 지원 수준과 시군 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개선과제 ◇

- 기존 학교부지 증축·개축 단계의 토양오염 확인-비용부담-기록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433호 (2026. 09. 30.)

○ 학교시설공사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뒤늦게 발견되면 정밀조사·정화·검증으로 공사와 개교가 지연되고 학생배치와 교육재정, 학교시설 이용의 안전성 및 학부모 신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령은 학교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오염의 사전 확인, 정화책임·비용부담의 판단, 조사·정화 경과의 기록·공개 체계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i)부지이력에 따른 위험기반 사전 확인 및 조사체계 강화, (ii)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을 위한 이력조사와 학생 사용 부지의 정화이행 절차 정비, (iii)토양오염 이력정보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연계한 기록·공개 체계 정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들어가며

2027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인천의 한 중학교 개교[1]가 1년 연기되었다.[2] 2025년 12월 학교 통폐합을 위한 증개축 공사의 기초터파기 단계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부평구청장은 2026년 1월 27일 토양오염 신고를 접수한 뒤, 정화책임자[3]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하였다.[4]

기존 학교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늘고 있다. 학교 신설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원도심 학교의 이전·재배치, 노후 학교의 개축·대수선 등이 진행되면서 굴착·터파기가 수반되고 있다. 문제는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토양오염이 처음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학교용지의 토양환경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정화 제도에 의해 관리되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1) 부평서중학교와 부평서여자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가칭)부평서중학교로 개교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부평서중학교, 「부평서중 · 부평서여중 통합개교 연기 안내」, 「가정통신문」 제2026-134호, 2026.6.24.
3) 이 사안에서 부평구청장은 공유재산인 학교용지에 대하여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정화책임자로 보고 토양명령조사 등을 명하였다. 사안에 따라 정화책임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상술한다
4) 장민재, 「부평서중·서여중 운동장 ‘유류 오염토’… 개교 ‘비상벨’」, 「경기일보」, 2026.3.30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5]와도 관련이 있다. 교육환경평가의 대상에 '지형·토양환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에 따른 토양오염의 신고 수리와 조사 및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소관 사무이고, 후자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승인과 사후관리는 교육감의 소관 사무이다.

다만, 토양환경 등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의무자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학교용지에서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착공 전까지 토양의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염이 확인·정화될 수 있더라도, 학생이 상시 이용한다거나 학교시설사업의 진행 등의 특성 때문에 조사·정화 절차가 실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착공 전 토양오염을 확인할 제도적 계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공사 중 뒤늦은 오염 확인으로 정밀 조사·정화 절차가 추가되면 공사 일정이나 개교 지연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학교용지 토양환경 관리 제도의 공백을 오염의 확인, 확인된 오염에 대한 비용부담, 그 경과의 기록과 공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교육환경평가와토양오염조사·정화제도

가. 교육환경평가의 적용 범위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을 정하고(제1항) 있으며, 학교의 교육환경평가의 대상에는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 · 외형, 지형 ·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된다(제2항).

교육환경평가서의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이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한다. 이에 따라 토양환경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일 것이 기재내용으로 요구된다. 참고로, 학교용지는 동 법률 규정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서 1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법 제6조제3항). 이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5))「교육환경법」 제6조제2항은 교육환경 평가 대상으로 "지형·토양환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법 제7조제2항),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6]

다만 이상의 절차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7] 학교 안으로 한정해보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시설사업[8]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기존 학교부지에서의 증 개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가 설립·신설된 시기가 교육환경평가 제도 시행 이전이거나 교육환경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과가 오래되었다면, 이 법에 따라 토양환경을 확인할 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토양오염 조사·정화 절차와 정화책임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하고,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별표 3]은 토지의 이용·용도 등에 따라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는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1지역에 해당한다.[9]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용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토양환경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교용지에서 토양오염은 공사 과정에서 오염 징후가 발견되어 신고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10] 동법 제11조 제1항은 토양오염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6)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법 제7조제1항). 다만, 현행 규정상 토양오염 사실의 확인은 중대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동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출 의무자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제1호), 도시 · 군관리계획의 입안자(제2호),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 의무가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제3호),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4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제5호)이다.

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 ·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장에서 열거한 기존 학교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사업 대부분 이에 포함된다.

9)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는 23개의 물질마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1지역500㎎/㎏, 2지역 800㎎/㎏, 3지역 2,000㎎/㎏을 넘지 않도록 하며, 납의 경우 1지역 200㎎/㎏, 2지역 400㎎/㎏, 3지역 7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10) 이 밖에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토양환경평가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로 한정되고,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용지 토양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염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원인·오염도 조사(제11조제2항), 토양정밀조사명령(제11조제3항 등),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제15조제3항), 정화 및 검증(제15조의6),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제15조의2)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시장·군수등은 토양오염 신고에 따라 조사 결과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토양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도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림 1 학교용지 토양오염의 조사·정화 등 절차



자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정화 등 절차 규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오염을 발생시킨 자, (ii) 토양오염 발생 당시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iii) 이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iv)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우선순위는 법률 자체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해야 한다.

학교용지는 오랜 기간 사용되거나, 매입·기부채납·용도변경 등을 거쳐 취득된 경우도 있어서, 토양오염의 발생 시점이나 원인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다. 실제 학교용지의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지위에서 정화책임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라 정화비용을 우선 부담한 정화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 학교시설의 사전기획·안전관리 및 정보체계

지금까지 살펴본 두 제도와 별도로, 학교시설 자체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교육시설이 사용되는 단계에서는 교육시설의 장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며, 그 대상에는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이력 정보,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은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

특히, 2021년 12월 28일 동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시설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데 여러 행정조치의 요구를 갈음하고자 제26조의2(사전기획) 등의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감독기관[12]이 학교의 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 전에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간구성, 사업의 규모·내용과 사업비,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과 안전, 발주방식,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다.

즉, 학교시설의 안전에 관하여는 사전기획부터 점검·보고·정보공개에 이르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관리사항은 물론 사전기획의 내용으로도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Ⅲ. 학교용지 토양오염 사례

가. 학교 통폐합 증개축공사의 착공 이후 확인된 사례: (가칭)부평서중학교

부평서중학교·부평서여자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가칭)부평서중학교 증개축공사 현장에서 2025년 12월 기초터파기 중 오염토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11) 「교육시설법」 제13조제1항은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동법 제14조제1항은 필요한 경우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하여 정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2) 이 법에서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TPH의 최고농도는 7,630㎎/㎏으로, 학교용지에 적용되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500㎎/㎏의 약 15배에 달하였다. 오염 예상면적은 1,207.1㎡, 정화대상 부피는 약 1,475.1㎥로 산정되었다.[13] 오염토양은 정화공사계획에 따라 반출정화가 추진되었으며, 정화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2027년 3월 예정이던 개교는 2028년 3월로 1년 연기되었다.[14]

나. 학교 부속시설 증축공사 중 확인된 사례: 부산혜원학교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부산혜원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다. 강서구청장이 공사 부지에서 검은 흙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한 결과, 카드뮴 17.41㎎/㎏, 구리 11,221.4㎎/㎏, 납 4,107.2㎎/㎏, 니켈 114.5㎎/㎏, 아연 15,757.6㎎/㎏ 등이 검출되었다. 이는 학교용지에 적용되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구리는 약 74배, 아연은 약 50배, 납은 약 20배에 해당하였다.[15] 이에 강서구청장은 정화책임자인 부산혜원학교[16]에 토양정밀조사 등을 명하였다.[17]부산혜원학교는 토양정밀조사 등을 바탕으로 2023년 5월 오염토양 반출정화 용역 공고 등 계약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6개월 동안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처리를 완료하였다.[18]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학생과 교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검진비 1,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다.[19] 다목적강당은 당초 2024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로 일정이 지연되어 2025년 6월 개관하였다.[20]

다. 노후 교사동 개축공사 착공 후 확인된 사례: 거제초등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거제초등학교에서는 2023년 1월 착공한[21] 노후 교사동 개축공사의 터파기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매립폐기물과 오염토가 발견되어 해당 구역의 공사가 중단되었다. 토양오염 조사 결과 TPH 18,166㎎/㎏, 아연 2,046.2㎎/㎏, 구리 1,423.7㎎/㎏, 니켈 1,185.6㎎/㎏ 등 7개 항목이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22] 이후 토양정밀조사와 정화공사가 실시되면서[23] 당초 2025년 11월 17일[24] 예정이던 준공은 2027년 5월[25]로 연기되었다.

13) 장민재, 앞의 글.
14) 부평서중학교, 앞의 글
15) 손혜림, 「[단독] 부산 강서 특수학교 중금속 다량 검출… 학생 건강 '비상'」, 「부산일보」, 2022.12.25
16) 부산혜원학교(사립학교)의 토지 소유주는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해당 사립학교경영자임
17) 권태완, 「부산 강서구 특수학교 공사 부지서 중금속 오염토 발견」, 「뉴시스」, 2022.12.26.
18) 부산혜원학교, 「부산혜원학교 오염토양 반출정화 과업지시서」, 2023.5.
19) 김미희, 「학교시설환경개선·통학안전지도시스템 구축 등 방점」, 「국제신문」, 2023.4.12.
20) 강경호, 「부산혜원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특수교육환경 개선」, 「뉴스부산」, 2025.6.29
2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2-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76-152번지의 학교시설사업(거제초등학교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 2022.8.2.
22) 이승륜, 「부산 공립초서 기준치 36배 초과 토양 오염물질 발견...“과거 쓰레기 태운 뒤 묻은 탓”」, 「문화일보」, 2023.11.9
23) 부산광역시교육청, 「거제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학부모 설명회」, 2024.12.21.

4. 라. 개축공사 이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 우암초등학교

2022년 5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우암초등학교의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학교 내 화단·운동장 등의 토양에서 아연 417.2㎎/㎏이 검출되어 1지역 우려기준인 300㎎/㎏을 초과했고, 남구청장은 정화책임자인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2년 이내에 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도록 명하였다.[26] 당시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4년 1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26년 개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공사 전에 정화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7] 2023년 토양정밀조사 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정화공사를 실시하였으며,[28] 관련 사업에는 총 11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다.[29] 현재 개축은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2030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30]

그림 2 사례별 토양오염 확인 시점과 학교시설사업 일정의 변경



Ⅳ. 학교용지 토양오염 관리의 제도적 공백

제III장에서 살펴본 사례는 기존 학교부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시점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평서중학교, 부산혜원학교, 거제초등학교는 공사 착수 이후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일정이 지연되었고, 우암초등학교는

24) 부산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 시교육청 소관사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2024
25) 거제초등학교, 「거제초등학교 개축공사 진행사항 안내」, 「꿈소담이」, 2026.3.12.
26) 김준현, 「초등학교 운동장서 또 중금속 검출」, 「부산일보」, 2024.1.3.
27)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임시회) 부산광역시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4.1.29
28) 우암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병설 유치원 오염토양 정화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안내」, 「우암통신」 155호, 2025.12.2.
29) 부산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2025.7
30)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년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2026.1.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26.8.10.

개축공사 이전 실태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되어 본격적인 공사 전에야 정밀조사와 정화를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개된 자료상 오염원인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주인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정화책임자로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으며, 준공이나 개교 연기는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의 배경에는 학교용지의 토양환경 관리가 교육감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무로 나뉘어 있음에도, 학교시설사업과 토양오염 조사·정화 절차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하에서는 오염의 확인 시점, 정화책임·비용부담의 판단, 그 경과의 기록·공개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오염의 확인 시점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자는 그 사업 자체만으로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출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3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도,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며, 통상 제5호에 따른 건축 규모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32] 즉, 이 법에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육환경평가 제도에 따라 토양환경을 착공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개축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에 해당하나, 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의 대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2제4항과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갈음하도록 정한다. 즉,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은 교육환경평가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승인과 건축허가의 별도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을 수 있어, 착공 전 부지의 토양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더욱 제한된다.

근본적으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의무에 관한 기준은 학교가 설립된 이후 주변 부지 등의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는 토양환경을 포함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학교 밖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개발이나 정비, 건축 시에만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뿐, 학교 안 토양환경이 여러 원인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 거제초등학교 사례의 경우 이 학교의 오염원은 학교 자신의 과거 소각과 매립 이력으로 추정된 바 있고, (가칭)부평서중학교 사례의 경우에도 인근

31) 같은 법과 하위법령에 "증축"과 "개축"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2) 법 제6조제1항제5호가 요구하는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말한다. 같은 항 단서 각 호는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물만 제외한다.

미군기지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류와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과 TPH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된 바 있다.[33]

시장·군수 등의 정기 조사에서도 학교용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비고 제1호는 학교용지를 가장 엄격한 1지역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이 정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의 대상은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폐받침목 사용지역의 주변이고,[34] 법 제5조제4항제3호 각 목이 정한 토양정밀조사의 대상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35]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부지의 일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으로 분류되어 토양오염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가 2025년에 조사한 160개 지점 중 지목이 '학교용지'인 곳은 12곳이었으며, 이 중 11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지표면 가까운 흙인 표토를 중심으로 조사하면 땅속 깊은 곳의 오염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만으로는 향후 공사 과정에서 깊이 파내는 토양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III장의 사례에서도 (가칭)부평서중학교와 부산혜원학교, 거제초등학교는 터파기 또는 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었고, 우암초등학교는 개축공사 이전의 실태조사로 확인되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설계와 공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정화에 필요한 공정이 뒤늦게 추가되므로, 사업비와 공사기간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공사 이전에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할 여지가 있다.

나. 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의 한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항은 정화책임자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와 함께 오염 발생의 원인자 등 네 가지를 열거하되 그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고 있다.[36] 살펴본 네 사례에서는 오염원인이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원인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다. 과거 미군기지, 매립 과정에서 반입된 토사, 인근 공장, 학교 자신의 소각 잔재물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정화명령 또는 정화비용의 부담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루어졌다.

33) 강찬수, 「인천 부평 미군기지 다이옥신·기름·중금속 오염 심각」, 「중앙일보」, 2017.10.27

3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35)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각 목은 토양오염사고 발생지역, 산업단지, 폐광산 주변지역,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36) 각주 9 참조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면책규정”이라 한다)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다.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제3호), 소유 또는 점유 중에 오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제4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으로서 정화책임자가 되지 않는다. 학교용지는 취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많아 면책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지의 이용이력과 소유권 변동, 오염 발생 시기와 원인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3장의 사례에서 이러한 면책규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면책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직접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결국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적정하게 판단하려면 오염원인과 부지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자료의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부담이 종국적으로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정화의 비용은 학교시설사업 일부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된다. 예컨대 우암초등학교의 정화공사 10억여 원과 검증용역 비용은 관할 교육지원청 명의로 계약되어 집행되었다. 그러나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은 원인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행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 결과 오염 발생의 귀책이 없는 자가 정화책임자로서 그 비용을 최종 부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부산혜원학교 사례에서 보듯 법률상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화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정화책임자의 부담 능력이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의 시점도 문제다. 공사 후 오염이 확인되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화비용과 설계·일정 조정이 추가된다. 반면 우암초등학교처럼 공사 전에 확인하면 정화비용과 소요기간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할 여지가 있다.

다. 토양환경 관리 경과의 기록·공개

정화가 끝나면 그 결과는 검증을 거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1항은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과 정화완료를 검증하게 하도록 정한다. 그 결과보고서는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화책임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된다. 다만, 법정 통보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이나 주민이 정화의 경과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같은 법 제5조제5항은 상시측정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법 제11조제3항이나

제15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실시하는 정밀조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제III장에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이러한 명령에 따른 정밀조사가 실시된 경우가 다수였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5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토지의 용도, 오염 정도, 정화조치 여부 등을 토양오염 이력정보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제4조의3은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작성 범위, 갱신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에서 실시된 정밀조사·정화·검증의 이력을 일관되게 작성·관리하고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시설법」 제23조제1항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대상으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이력 정보,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된 사실이나 정화·검증의 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학교의 부지가 교육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양오염 이력은 물론 토양정화등에 따른 공사 지연의 경과에 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조하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거제초등학교의 준공일을 모두 같게 적고 있다. 학교구성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설명회 등 개별 학교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염이 학교시설사업의 일정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제도 정비를 위한 근거도 축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Ⅴ.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

학교용지의 토양오염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 기록·공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사업과 토양오염 관리절차를 연계하여 학생 보호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 위험기반 사전 확인 및 조사체계의 강화

첫째, 기존 학교부지의 증축·개축에서는 사업 규모뿐 아니라 과거 이용이력과 토양오염 개연성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은 학교 설립,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사업, 정비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등을 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자를 정하므로, 기존 학교의 증축·개축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37] 따라서 과거 공장·주유소·군용지·매립지 등의 이용이력,

3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기존 학교부지의 증축·개축도 제1항의 다른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운영 중의 소각·매립, 외부 토사 반입 및 주변 지역의 오염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토양조사로 연결하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을 활용할 수 있다. 사전기획은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중 추정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며, 설계 전에 사업 규모·내용·사업비와 안전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38] 여기에 토양오염 이력 확인을 포함하고, 오염이 우려되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설계·예산·공사기간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과 실시 주체 등 기본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험 판별기준과 조사방법은 하위법령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사전기획 대상이 아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높거나 굴착으로 오염토양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조사는 예상 오염원과 굴착 범위·깊이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구간은 그 한계를 기록한 후 철거 후 해당 구간의 굴착 전에 추가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이용이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도 오염 우려가 높은 학교용지를 우선 선정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므로 학교용지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39] 실태조사는 사용 중인 학교부지의 오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공사 전 조사는 굴착 예정 구간의 오염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구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표토 조사 결과만으로 향후 굴착할 토양 전체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정화책임·비용부담 판단 및 정화이행 절차의 정비

둘째, 오염원인이나 다른 정화책임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부담이 특정 주체에 고착되거나 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을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 규정과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두고 있다.[40] 이를 적용하려면 부지의 취득 경위와 이용이력, 오염 발생 시기·원인 등에 관한

3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사전기획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39)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항. 시행규칙은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사방법·절차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40)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항의 책임 제외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단서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제4항은 정화명령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정화책임자가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는 공개자료만으로 원인자가 특정되었는지, 책임 제외 요건이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토양정밀조사 관련 규정은 부지의 이용이력과 소유권 기록 등을 조사하도록 하면서, 대상물질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41] 이에 따라 책임 판단에 필요한 이력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용지에서는 오염물질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력, 소유권 변동, 굴토·복토 및 과거 오염사고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사기관은 사실자료를 확보하고 처분청은 정화책임과 책임 제외 요건을 판단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사 한계를 기록해야 한다.

학생 보호조치는 오염이 확인된 때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은 최초 이행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하면 최대 4년이 될 수 있다.[42] 따라서 기간 연장 시점에만 보호조치를 검토하기보다 오염 위치·깊이, 물질의 특성과 학생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입 제한, 노출 차단, 비산먼지 관리 및 대체 활동공간 확보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간 연장 시에는 정화 진행상황과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화비용의 우선 확보와 최종 부담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전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되, 공사 중 추가 오염이 발견되거나 책임 판단이 지연되더라도 조사·정화와 학생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비용 지원과 행정기관의 직접 정화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한 학교용지 오염에 대한 우선 지원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43] 이때 우선 지원이 책임 면제나 최종 비용부담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와 사후 정산·회수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 토양오염 이력의 기록·공개체계 정비

셋째, 학교용지의 토양오염과 조사·정화 경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5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토지의

41)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호 가목. 기초조사에는 연혁·토지이용 현황, 소유권 기록, 굴토·복토 자료 및 과거 오염사고에 관한 청취조사 등이 포함된다. 선택적 조사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학교의 이력조사가 실제 생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되, 정화공사의 규모·공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회 1년 이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조사부터 정화 완료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4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 및 제15조제3항 단서. 전자는 일정 요건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후자는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직접 정화를 규정한다.

용도, 오염 정도 및 정화 조치 여부 등을 이력정보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제4조의3은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도록 한다.[44]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정화명령에 따라 정화한 학교용지도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거가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필수 기록항목과 자료 제출·갱신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조사 위치·깊이·결과, 정화 범위·방법 및 검증 결과와 함께 조사하지 못한 구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기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 제11조제3항과 제15조제1항·제3항 등에 따른 명령으로 실시한 조사·정화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주체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 위임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근거를 보완할 수 있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서도 학교별 토양오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23조는 대통령령에 따른 관리사항추가와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두고 있다.[45] 이를 활용하여 토양환경 관련 정보시스템의 조사·정화정보를 연계·조회하고, 공사 중지·재개, 준공·개교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및 학생 보호조치 등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대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법」 제24조제1항의 보고대상에 학교 이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오염을 명확히 포함하되, 보고 의무와 보호조치의 내용·주체·권한을 구분하여 정비해야 한다.[46]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는 오염물질과 농도, 조사 위치·깊이, 이용 제한 범위, 보호조치, 정화 일정 및 검증 결과를 제공하고, 정화 완료 후 이용 재개와 추가 관리사항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조사·정화 현황과 사업 일정·비용에 미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집계·공개하고 주요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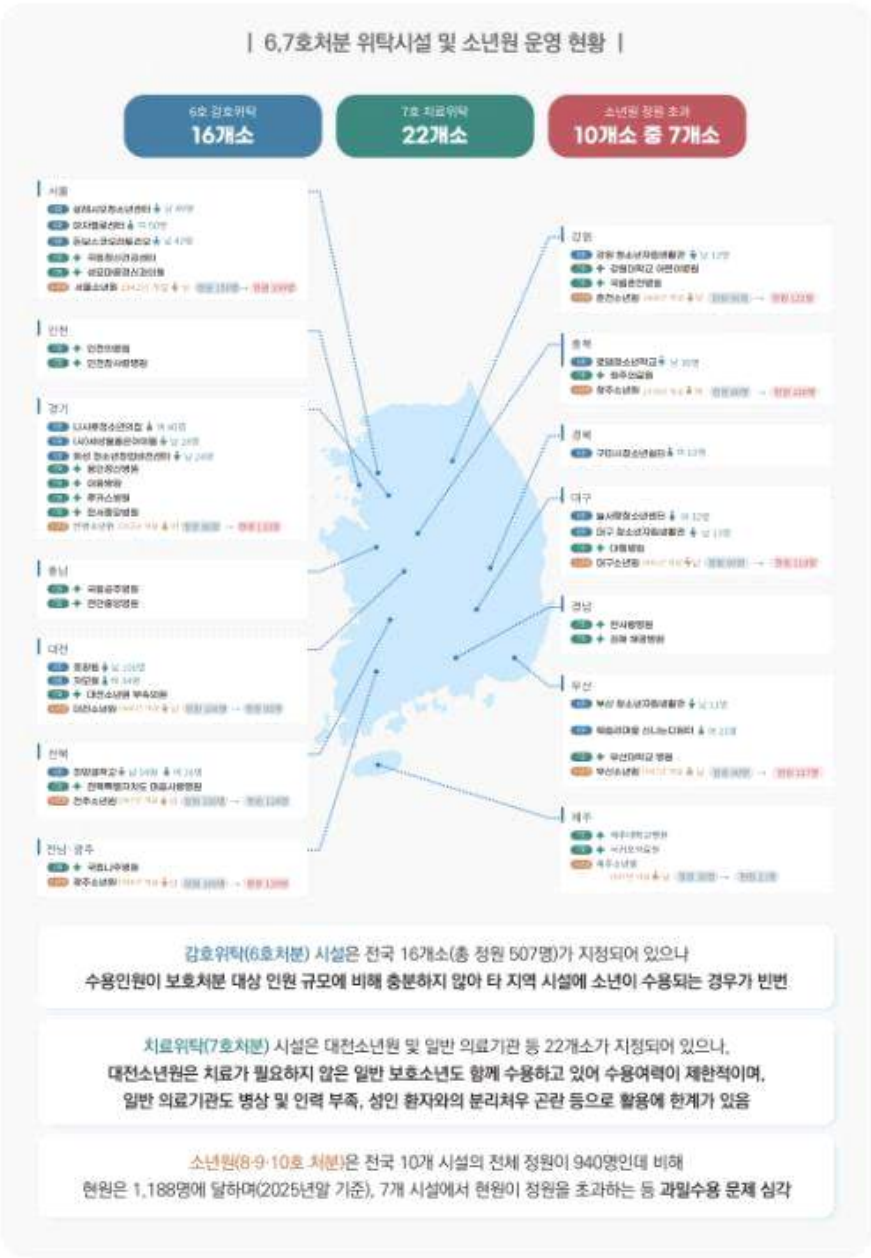
4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5 및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4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대통령령에 따른 관리사항 추가, 정보 공개 원칙,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한다.
4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시행령은 보고에 사고·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및 필요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보호조치 의무나 명령 권한을 추가하려면 그 법적 근거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 ◇

- 결국 사회로 돌아올 소년범들을 위한 교화체계 내실화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104호 (2026. 09. 30.)





소년보호체계의 과부하와 개별화된 처우의 한계

☑ 시설 부족으로 인한 과밀 수용과 업무 과중은 개별화된 처우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대상인원이 증가할 경우

소년별 특성에 맞는 교육, 상담, 생활지도 등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처우 제공이 어려워짐

특정 처우 단계의 과부하

소년원의 과밀수용은 보호관찰·감호위탁 등 다른 처우 단계의 부담 또한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개별화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킴

실질적인 선택지 확보 및 개별화된 처우 실현 방안

☑ 법률에 마련된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하고 본래의 교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인력과 운영기반 강화 필요

01 소년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현황과 지역별 수요·공급, 처분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필요한 시설과 수용능력 확보**

02 이러한 시설 수급 및 운영여건 개선이 개별 기관에 그치지 않도록
법무부·법원행정처·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제도화**

03 소년보호시설별 적정 관리·수용 인원, 필요 인력, 프로그램 운영기준 등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개별화 처우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

04 마약·도박 중독, 정신건강 문제, 반복비행 등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위탁(7호처분)과 집중 관리체계 등을 활용해 **특성화 처우체계 마련**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국외 입법동향

◇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9. 21.)

○ 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자금세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업, 휴업, 폐업, 해산 및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 운영정보의 관리 및 비밀유지,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의 발행 또는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허위·사기·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천만 신대만달러 이상 2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자금세탁방지 관련 등록을 마친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21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금융감독당국은 법안이 통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생성 가상자산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러시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10. 7.)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 7월 26일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였다. 이 법률은 러시아에서 AI 분야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연방법률로 평가된다. 이 법률은 러시아에서 대규모 AI 기반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 및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AI 기반 모델의 이용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안전과 기술적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법률에서 '대규모 AI 기반 모델'은 인간의 지적 활동과 동등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지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10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AI 기반 모델을 '주권형'과 '국가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 내 데이터 처리의 현지화와 러시아 법인의 참여 등을 요구한다. 주권형 모델은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 러시아 기업이 개발하는 모델을 의미하며, 국가형 모델의 경우 외국의 구성요소 및 공개 솔루션 활용이 허용된다.

○ 이 밖에도 법률은 AI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한다. 일일 이용자가 50만 명을 초과하는 인터넷 사이트·애플리케이션·사회관계망서비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소유자는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조건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AI 모델 개발자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였고 해당 저작물이 기술적 제한 없이 분석 가능한 경우, 이를 신경망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법률은 AI 전반을 제한하기보다는 대규모 AI 기반 모델의 개발과 도입, 이용을 지원하고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대규모 AI 기반 모델 개발업체와 국가 지원을 받거나 국가와 협력하려는 기업에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적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률에서 자국의 AI 개발업체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현지화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 역량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이 법률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9호[통권 제309호] (2026. 9. 22.)

◆ 독일 연립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에 2026년 7월 2일, 공정하고 포괄적인 개혁안을 담은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을 발표하였다. 본 개혁패키지는 5개 분야에 걸친 총 34개의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 독일 정부는 본 개혁을 뒷받침하고 상시적인 고용안정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사회법 분야의 주요 법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 및 고용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법전 제3권(SGB III)」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고용 유지 체계를 규율하는 「해고보호법(KSchG)」, 그리고 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과 공동결정을 보장하는 「경영조직법(BetrVG)」 등이 변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 독일은 개별 입법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혁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말부터 연금개혁법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관련 법률을 '일괄개정법률(패키지법률)' 형식으로 통합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을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신속하게 완수하고자 한다.

관련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고용보험법」

주 제 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고용안정, 사회통합

Ⅰ. 도입

○ 독일의 전통적인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과의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당(CDU/CSU) 연합과 중도좌파인 사민당(SPD)으로 구성된 메르츠 연정은 극우 정당(AfD)의 부상과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타협을 통해 독일의 성장, 고용, 세제 개혁 및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자 계획인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에 전격 합의하였다.

○ 20세기 말 독일 경제는 통일 비용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였고,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장기 불황을 겪었지만,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1]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혁은 노동과 고용 측면에서 하르츠 개혁과 궤를 같이한다.

○ 이 개혁은 시민과 기업이 직면한 관료주의적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시스템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 개혁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5대 분야(① 연금, ② 조세, ③ 노동시장, ④ 성장과 공정성, ⑤관료주의 축소)의 총 34개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보, 국민과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기대한다.

○ 이번 개혁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률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개정 대상 법률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세제 혜택을 유도하는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근로기준/단기근로법(Arbeitszeitgesetz/TzBfG)」,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수급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연금개혁법안(Rentenpaket 2025/2026)」, 디지털 및 산업 전환기 속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자격기회법(Qualifizierungschancengesetz)」 등이다.

Ⅱ. 경기회복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은 노동법 및 세법 개정, 관료주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총 34가지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담은 법정책 패키지이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구체적인 법안의 초안으로 구체화되어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 핵심 주안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 첫째, 노동법 개정을 통한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이다. 현행 1일 기준의 근로시간 제한을 주간 단위의 유연한 근로시간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적 근로권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 고용 관련 규제를 대폭

1)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총 4차례의 법률 제·개정(하르츠 I~IV)을 통해 사회법전(SGB)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단행되었다.
- 하르츠 I·II법 (고용서비스 혁신 및 유연성 제고): 인력알선대행사(PSA) 도입을 통해 공공 직업알선 기능을 민간 및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며, 소액 시간제 근로인 미니잡(Mini-job)과 미디잡(Midi-job) 제도를 활성화하여 비정형 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하르츠 III법 (연방고용공단 조직 개편): 기존 관료제 중심의 고용사무소를 효율적인 구직 서비스 중심의 기관으로 재편하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 하르츠 IV법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통합): 가장 논쟁적인 입법으로, 기존의 소득 비례적 장기 실업부조와 빈곤층 대상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단일 급여(실업급여 II)로 개편했다. 이는 급여 수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거부 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 내 고용 활력을 제고하는 입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둘째,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의 개선이다. 기업의 전반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 셋째, 입법 의무 조항을 통한 관료주의 부작용의 근본적 해소이다. 이번 개혁패키지는 국가 전반의 규제 총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시에 기업 설립 및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차세대 행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 비용과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체적으로 34개 개혁 내용을 프로그램의 목적 위주의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경기회복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노동법적 유연성 확대 및 고용촉진	① 기간제 고용규제 완화	기간제 근로계약을 4년까지, 최대 6회로 확대하여 고용유연성 확보
	② 고소득 근로자 해고 보호 완화	고부가가치 산업의 스타트업 유치 및 선순환을 위해 고소득자 해고제한을 완화하고, 조기 재취업 시 퇴직금 세제 혜택
	③ 근무태만 억제 및 규율 강화(병가 제도 개선)	기존 3일 초과 시에 제출하던 병가증명서를 병가 첫날부터 의무화하여 높은 병가율로 인한 기업의 부담 감경
조세부담 완화 및 재정 재분배	① 중·저소득 가구 감세	내수진작을 위해 연간 100억 유로의 중·저소득 가구의 소득세 감면
	② 고소득층 증세(재원 조달)	연소득 28만 유로 이상 고소득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45%에서 47%로 인상
	③ 기업투자촉진 세제 도입	기계 및 장비 투자에 대해 첫해 30% 감세조정을 허용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현대화 투자 유도
사회보장 및 행정구조 개혁	① 연금 및 복지제도 개편	비용 부담이 큰 부과방식의 연금체계를 개편하여 2026년 말까지 연금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며, 복지수당 부정수급 근절
	② 관료주의 타파 및 디지털화	연방부처 인력을 8% 감축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기업의 규제비용 대폭 절감

Ⅲ. 경기회복과 고용을 위한 법률 개정

○ 독일 연립정부는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고용유연성 확대, 연금개혁, 병가 규정 강화, 복지 및 행정 효율화에 법률 개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독일 연방정부의 개혁에 따른 관련 입법 및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2)]

표 2 경기회복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개정 법령

(2026. 9. 16. 현재)

분야/구분	법령/프로그램	주요 개정·조치 내용	시행/추진 현황	경기·고용 측면의 목적
투자 세제	투자촉진프로그램 (Investitions-Booster)	2025.7~2027 설비투자에 최대 30% 정률 감가상각 허용. 2028년부터 법인세 단계적 인하	2025.7 시행	기업 설비투자를 앞당겨 민간투자·생산 확대
기업금융	지역유치법 (Standortfördergesetz)	스타트업·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개선, 벤처·인프라 투자여건 개선	추진·시행 단계	민간자본 동원, 스타트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	인프라 및 기후중립 특별기금 (Sondervermögen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인프라·기후중립 분야에 대규모 특별재원 투입	2025.10 시행, 2025.1 소급	건설·교통·디지털·에너지 투자 확대 및 경기부양
민간투자	독일기금 (Deutschlandfonds)	공공자금·보증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 유도	2025.12 출범	중견기업·산업·스타트업·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에너지	산업용전기요금 (Industriestrompreis)	에너지집약적 산업에 산업용 전력가격 지원	2026.5 시행	에너지집약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및 국내고용 유지
노동 공급	적금 연금 (Aktivrente)	정년 도달 후 계속 근로할 경우 월 최대 €2,000 근로소득 비과세	2026.1 시행	고령자 계속근로 유도, 전문인력 부족 완화
고용·복지	기본소득지원 (Grundsicherung) 개혁	시민수당(Bürgergeld)을 새로운 기본소득보장제도로 개편, 취업 가능한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강화	2026.7 단계적 시행	노동시장 복귀·취업 유인 강화

2) 독일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chwerpunkte/reformen-fuer-deutschland

분야/구분	법령/프로그램	주요 개정·조치 내용	시행/추진 현황	경기·고용 측면의 목적
고용지원	고용촉진 (Arbeitsförderung) 현대화·디지털화 법안	취업·고용지원 절차 현대화 및 디지털화	2026.7 정부 법안 의결	취업 지원 효율화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전문인력	숙련이민 (Fachkräfteeinwanderung) 관련 개선	전문인력의 합법적 이민·취업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	개혁 추진	Fachkräftemangel (전문인력 부족) 완화
인프라	미래인프라법 (Infrastruktur-Zukunftsgesetz)	도로·철도·교량 등의 계획·건설 및 관련 절차 신속화	2026.7 시행	특별기금의 실제 투자집행 속도 제고
건설	건설촉진 (Bau-Turbo)/건축법전(BauGB) 개정	주택건설 계획·허가절차 간소화·신속화	Bau-Turbo 2025.10 시행, 추가 BauGB 개정 추진	주택건설 투자 촉진
통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개정	광섬유·이동통신망 확대 절차 신속화, 통신망 확대의 공익성 강화	2025~26 시행·추가 개정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진
전력망	연방수요계획법 (Bundesbedarfsplangesetz) 등	고압 송전망 확충·계획 신속화	2026.4 관련 개정 의결	전력망 투자 확대 및 산업용 전력 안정화
공공조달	공공조달법 (Vergaberecht) 개혁	연방·주·지자체 공공조달을 단순·유연·신속·디지털화	2026.7 주요 조치 시행	공공투자 집행 가속, 기업 참여비용 감소
규제 완화	관료제축소 (Bürokratierückbau)	기업 보고·문서 의무 축소, 승인 간주(Genehmigungsfiktion) 확대 추진	2025~26 계속 추진	기업 행정비용 절감

1. 노동 및 고용시장 관련 법률 개정

○ 근로계약 유연화를 위하여 2030년까지 객관적 사유가 없는 기간제(fixed-term) 근로계약 허용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내 갱신 횟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실직자 재취업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에 복귀하는 실직자에게 퇴직금 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여 노동시장 이동성을 촉진하고 있다.

○ 병가 및 출근 관련 규칙을 강화하여 높은 병가율과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전화로 병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병가 첫날부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사회보장 및 행정·세제 개혁 관련 법률 개정

○ 연금 및 복지 개혁와 관련하여 연금 기여금 안정을 위한 법안 정비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복지 부정 수급 근절 계획을 병행한다.

○ 특히 연금개혁 등 핵심 법안은 2026년 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하고, 개별 조치는 2026년 말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법안에 대한 연방의회 검토와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3. 관료주의 축소 및 행정의 현대화

○ 연방정부는 2025년 연방의 현대화 계획(Modernisierungsagenda Bund)[3]을 통해 전체 임기 동안 국가와 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가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작성한 연방 현대화 의제(Föderale Modernisierungsagenda)도 이 목적에 부합한다.

○ 최근 40건이 넘는 관료주의 완화 조치로,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연간 100억 유로 수준 절감했다.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보고 및 문서 작성 요구가 축소되고,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더 많은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의 관료주의·행정부담 완화 조치(Bürokratieabbau/Bürokratierückbau)는 디지털 행정, 보고·증빙 의무 축소, 인허가 신속화로 요약될 수 있다.[4]

4. 세금 정책-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구제

○ 연정합의에 따라 연방정부는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제 개혁 패키지를 마련하고, 기본 수당, 아동 수당, 직원의 고정 수당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Ⅳ. 요약 및 결론

○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Ein Programm für Aufschwung und Beschäftigung)”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3) 독일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oederale-modernisierungsagenda-2397632
4) 독일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caretaker-cabinet-2026-2447188

독일 연방정부는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 및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패키지를 마련하고 여러 분야의 관련 법률 제·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노동 보호 국가였으나,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신규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해고 및 고용의 유연성'을 과감히 도입했다.
- 소득세 개혁에 있어 중산층 감세와 사회적 안전망을 결합해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시도했다.
- 연금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대규모 연금법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및 급여구조를 혁신한다.
- 사회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사회부와 내무부가 공동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급여체계를 개편한다.
-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화를 위해 보고문서 작성 의무를 대폭 폐지하고 규제 완화 패키지를 추진하며 인프라 신속화법을 시행한다.
- 친환경 기술(Clean Tech) 및 인공지능(AI), 방위·항공우주 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 현재까지 경기회복 및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립정부의 결정으로 포괄적인 단일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프로그램의 계획들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개별 법률의 제·개정은 2026년 하반기부터 연방의회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법, 사회보장법, 고용법 등에 미칠 장기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될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독일의 입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 국회도서관】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입법사례 ◇

1 [미국 유타주 아이언카운티] - IRON COUNTY CODE - 1994

◇ 번역문

제17편 용도지역 지정

제17.37장 데이터센터

17.37.010 목적

제17.37장은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장에서 정의한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인프라의 입지·건설·변경에 관한 최소 요건과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37.020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다음 단어·용어·표현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데이터센터"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데이터 및 트랜잭션 처리 장비와 전력 및 냉각 장비를 포함한 관련 인프라 지원 장비를 수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단일 건물, 여러 건물 또는 구조물로 구성된 부동산 및 동산을 말한다.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이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데이터센터에서 소비할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사업 규모의 상업용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탄화수소계 연료, 지열정, 풍력 에너지 시스템, 원자력 연료 시스템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태양에너지, 열에너지 또는 기타 전력 변환 기술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전력을 저장·생산·송전·배전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란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전기 인프라, 에너지 및 연료 인프라,

송전, 배전 인프라를 말하며, 여기에는 광섬유 케이블 관로와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연료 수송·분배 인프라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7.37.030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및 설계 기준

모든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은 다음의 최소 규정 및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A. 허용 입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은 아이언카운티 용도지역 조례 제17.16.030조의 용도표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B. 설계 기준.

1. 최소 부지 면적.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은 면적이 20에이커 미만인 부지에 건설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는 면적이 5에이커 미만인 부지에 건설할 수 없다.

2. 최대 높이. 모든 구조물의 최대 높이는 조건부 사용 허가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높이가 35피트 이하인 구조물은 항상 허용된다.

3. 이격거리.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구조물은 모든 부지 경계선과 공공도로 통행권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0피트 또는 구조물 높이의 1.25배 중 더 큰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구조물은 주거용으로 지정된 모든 부지와 기존 주택으로부터 최소 1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소음 및 눈부심 영향을 완화하거나 지정된 도로 또는 공공설비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이격거리가 요구될 수 있다.

4. 안전/접근/울타리. 데이터센터 시설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외곽에는 적절한 보안용 또는 가축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울타리의 높이와 자재는 조건부 사용 허가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비상 대응 인력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출입구에는 비상 출입용 열쇠 보관함과 열쇠를 비치해야 한다.

5. 소음.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다음의 어느 기준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a. 인접한 주거용 용도지역 부지의 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은 55dBA 이하일 것

b.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인접한 기존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은 50dBA 이하일 것

c. 사업구역 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은 65dBA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요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와 계획위원회가 더 높은 소음 수준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칙적으로 65dBA의 소음 제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발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더 높은 소음 수준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서는 변경되는 소음 기준과 변경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권리승계인 포함)와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 개발업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또는 지역권 설정의 형태로 체결되어야 한다. 해당 합의는 사업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소음 관련 합의서는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조건부 사용 허가가 발급되면 카운티 등기담당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6. 외관.

a.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건물과 부속 구조물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재·색상·질감을 사용해야 한다.

b. 주요 도로 및 인접 주택에서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과 부속 구조물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조경 또는 차폐 시설의 설치가 요구될 수 있다.

c. 시각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과 부속 구조물의 조명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7. 전기 계통 연결. 사업구역 밖으로 연결되는 전력선이나 변전소 내부의 전력선을 제외하고, 사업구역 내 20kV 미만의 모든 전기 연결선 및 배전선은 지중에 매설해야 한다. 20kV를 초과하는 전선은 습지, 절벽, 단단한 기반암 등 심각한 환경적 제약이나 거리 및 기타 사업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중 매설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모든 전기 계통 연결 및 배전 설비는 관련 법규와 공공설비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8. 화재 예방. 모든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은 아이언카운티 산림·도시 경계 지역 규정에 따라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근로자 지원 인프라.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직원과 서비스 인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사무실 공간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유타주 남서부 공중보건 당국, 유타주 환경품질부, 아이언카운티의 용도지역 규정 및 건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C. 지방·주·연방정부 허가.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은 유타주 대기질관리국과 수질관리국을 포함한 유타주 환경품질부의 모든 필수 허가와 아이언카운티 및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17.37.040 허가 신청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서에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제17.37.030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17.37.050조 및 제17.28.050조 제A항의 심사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이용 관할 당국은 이 장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와 관련된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은 데이터센터 및/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조건부 사용 허가 신청과 함께 심사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허가 신청 당시 해당 시설 개선 사항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조건부 사용 허가 심사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또는 데이터센터 발전시설의 허가 신청 시에는 최소한 전력망 연결 예정 경로와 변전소의 대체 입지 후보지를 명시해야 한다.

17.37.050 조건부 사용 허가 심사 규정

아이언카운티 조례 제17.28장의 규정에 따라, 카운티는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신청이 카운티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또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A. 사업 추진 근거. 예상 공사 일정, 사업 존속기간, 단계별 추진 계획, 생산된 에너지의 잠재적 구매자, 판매 시장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근거.

B. 입지 선정 고려 사항. 입지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야생보호구역 지정 검토 지역, 환경적 우려 지역, 카운티 및 주립공원, 역사적 탐방로, 특별관리지역, 주요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이동통로 등 생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할 것, 주요 경관 조망구역에 해당하는 경관축이나 카운티가 지정한 경관지역을 피할 것, 수질 악화·산사태·심각한 토양 침식·집중호우 시 대량의 지표 유출수 발생 우려가 확인된 침식 취약 사면

C. 부지 및 개발 계획. 부지 및 개발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그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모든 기존 및 계획 구조물, 이격거리, 진입로, 도로 개선 계획, 태양광 발전 사업지에서 0.25마일 이내 또는 집광형 태양열 발전 사업지에서 0.5마일 이내에 위치한

기존 거주 가능 건축물과 주거용 용도지역 부지, 기존 공공설비·배관·송전선로, 계획된 공공설비 선로(제17.37.030조 제B항 제9호에 명시된 근로자 지원 인프라 포함), 공공설비 및 유지관리 구조물, 기존 지형의 등고선, 기존 및 계획 배수로, 계획된 토지 정지 작업, 자연 식생 제거 지역, 식생 복원 지역 및 방법, 비산먼지 및 토양 침식 방지 대책, 범람원 또는 습지, 그 밖에 카운티 담당 직원이나 계획위원회가 지정한 관련 사항. 모든 지도와 시각 자료는 적절한 축척으로 작성해야 한다.

D. 지역경제 편익 분석. 다음 사항의 추정치를 포함한 지역경제 편익 분석: 사업비, 세수 발생액, 전체 공사비 중 지역 내 지출 비율, 지역 내 건설 일자리 및 상시 일자리 수.

E. 시각적 영향, 외관, 경관 조망구역. 냉각탑, 수증기 기둥, 지상 전력선, 부속 구조물, 진입도로, 공공설비 매설용 도랑 및 설비, 식생 변경 등 사업의 구성 요소로 인해 시각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경관에 민감한 조망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높이 35피트를 초과하는 구조물을 계획하는 사업은 계획된 구조물의 시각적 시뮬레이션과 잠재적인 눈부심 영향 분석을 포함한 경관 조망구역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각적 시뮬레이션은 제안된 사업의 시각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수량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구역의 모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4개 이상의 관측 지점에서 수행해야 한다. 계획위원회는 이론적 가시구역/시각적 영향구역 분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정해진 반경 내에서 대상 물체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360도 컴퓨터 분석이다. 적절히 완화할 수 없는 중대한 시각적 영향은 허가 거부 사유가 된다.

F. 야생동물 서식지 및 이동 경로.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의 해당 부지 이용 여부와 사업구역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이 서식하는 경우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G. 환경 영향 분석. 사업에 대해 주 또는 연방기관의 환경영향 검토(예: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른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획위원회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고고학적 자원, 토양 침식(물과 바람에 의한 침식), 식생, 수질, 수자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H. 고형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연료·오일·유해폐기물의 유출 방지, 유출물 정화, 폐기 계획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의 수거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I. 높이 제한 및 연방항공청 항공안전 위해요소 검토. 해당하는 공항 중첩 용도지역 규정을 준수하고 항공 운항에 대한 위해요소와 관련된 연방항공청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J. 건설 및 운영 단계의 교통계획. 사업의 건설 단계와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이용할 도로 및 해당 도로의 기존 포장 상태와 현황을 설명과 지도로 제시해야 한다. 사업의 건설 및 운영·유지관리 기간에 필요한 신규 도로와 기존 도로망의 확장 또는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교량, 암거, 가축 울타리 통과시설(출입문, 가축 통행 방지시설) 등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선을 위해 절토나 성토 등 지형 변경이 예상되는 모든 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사업의 건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해체와 관련된 도로의 개선·복구·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 기간의 예상 교통량을 차량의 일반적인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규격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예상 운행 횟수를 대략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통체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카운티는 사업의 건설 또는 해체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훼손된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의 적절한 보수와 복구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 시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의 공사 전 상태를 동영상, 사진, 서면 기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K. 공공안전. 사업으로 인해 인접 부동산, 공공도로, 지역사회, 항공 운항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L. 소음 제한. 제17.37.030조 제B항 제5호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소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M.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영향.

【자료 출처 : 미국 유타주 아이언카운티】

2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스윌리엄카운티] - CODE OF ORDINANCES COUNTY OF PRINCE WILLIAM, VIRGINIA

◇ **번역문**

제32장 용도지역 지정 제5절 중첩 용도지역

제509부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

제32-509.01조 목적 및 취지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은 데이터센터의 용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존 기반시설이 갖춰진 카운티 내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용도지역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면서 첨단산업 개발을 유치하고 촉진하려는 카운티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제32-509.02조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의 지정

1.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지도와 카운티 조례 제32-509.02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다. [조례 채택일 삽입] 이후에는 특정 부동산을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에 포함하기 위한 지도 변경 요청을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는다.

2.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i) [조례 채택일 직전일]에 해당 용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ii)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a) [조례 채택일 삽입]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용도를 명시한 자발적 개발조건 또는 제안된 개발조건을 수락하고, 신청인이 해당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조건 변경을 선의로 신뢰하여 특정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b) [조례 채택일 삽입]까지 지정된 카운티 담당자가 데이터센터의 예비 토지분할도, 예비 부지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신청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종 토지분할도 또는 최종 부지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해당 승인을 선의로 신뢰하여 특정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c) [조례 채택일 삽입]까지 지정된 카운티 담당자가 데이터센터의 최종 부지계획, 최종 토지분할도 또는 최종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신청인이 해당 승인을 선의로 신뢰하여 특정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d) 용도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기타 행정 담당자가 데이터센터 용도의 허용 여부에 관해 서면 명령·요청·결정·판단을 내렸으며, 해당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버지니아주 법전 제15.2-2311조 제C항에 따른 변경·수정·취소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를 선의로 신뢰하여 특정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e) [조례 채택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오후 11시 59분까지 데이터센터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신청, 특별 사용 허가 신청, 개발조건 변경 신청, 변전소에 대한 공공시설 검토 신청 또는 기타 입법적 승인 신청이나 데이터센터의 최종 부지계획 또는 최종 토지분할도를 카운티 지정 직원에게 제출하고, 해당 직원이 품질관리 심사를 위해 이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인이 해당 용도지역 변경, 특별 사용 허가, 개발조건 변경, 변전소 공공시설 검토 신청 또는 기타 입법적 승인 신청, 최종 부지계획 또는 최종 토지분할도의 승인을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3. 해당 중첩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에 중첩하여 적용한다. 기존 용도지역과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의 규정 및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제32-509.02조의 규정과 기존 용도지역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제32-509.02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4. 데이터센터 설계 기준. 데이터센터는 다음 설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A) 건물의 주요 입면. 건물의 주요 입면에는 인접한 주요 간선도로나 주간고속도로와 마주 보는 모든 건물 입면이 포함된다. 건물에 주요 입면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주요 입면은 디자인, 자재, 세부 요소, 마감 처리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주요 입면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건물의 주요 입면에는 다음 설계 요소 중 최소 두 가지를 적용하여 구분 없이 단조롭게 이어지는 외관을 피해야 한다.

a. 건물 높이의 변화
b. 건물의 후퇴 배치 또는 입면의 요철 처리
c. 창호 설치
d. 건축 자재 또는 패턴, 질감, 색상의 변화
e. 강조 자재 사용

(B) 기계설비 차폐. 인접 도로 및 부동산에서 기계설비가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 및 옥상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주요 간선도로, 주간고속도로를 비롯해 인접한 주거용 용도지역 또는 주거용 개발계획 부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해야 한다. 차폐에는 주요 건물이나 해당 부지에 존치되는 기존 식생 또는 인접 부동산의 조경·완충구역 지역권 내에 있는 기존 식생을 활용할 수 있다. 주요 건물이나 기존 식생으로 차폐되지 않는 기계설비는 불투명 울타리, 차폐벽 또는 패널, 난간벽, 기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차폐시설을 이용해

가려야 한다. 이러한 차폐시설은 주요 건물 외장재와 조화를 이루는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국장이 기계설비의 설치 위치가 인접 도로 및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 완충녹지 설치 요건. 데이터센터가 인접한 주거용 용도지역 또는 주거용 개발계획 부지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한다.

설계시공 표준 매뉴얼 제800조의 완충녹지 요건을 대신하여,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해당 용도로 개발할 계획도 없는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측면 또는 후면 부지에는 높이 6피트 이상, 경사도 2:1 이하의 흙 둔덕을 조성하고, 그 위에 설계시공 표준 매뉴얼의 C형 완충녹지 기준에 따른 필수 식재를 갖춘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한다. 완충녹지의 식재는 설계시공 표준 매뉴얼의 요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국장이 자연 지형과 기존 식생의 보존(필요시 신규 식생 보완) 또는 높이 6피트의 불투명 울타리 바깥쪽에 조성한 식생이 흙 둔덕을 포함한 완충녹지와 동등한 밀도·깊이·높이로 인접 토지의 이용 구역에서 보이는 경관을 차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기 요건의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D) 울타리 설치. 부지 내 울타리 설치는 허용된다. 다만, 공공도로 또는 사유도로를 따라 설치하는 울타리는 가림판 삽입 여부와 관계없이 체인링크 울타리여서는 안 되며, 철조망이나 이와 유사하게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침입 방지 장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공공도로 또는 사유도로에 접한 부지 전면에는 체인링크 울타리나 철조망 울타리의 설치를 금지한다. 이러한 울타리 설치 허용 규정이 부동산 소유자의 소방 및 출입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조경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울타리의 가시성을 낮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계획국장은 해당 요건을 대체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되는 울타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 용적률.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 내 데이터센터는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제외한 모든 개발 기준을 충족하고 카운티 조례 제32-509.03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다.

(F) 변전소. 변전소는 인접한 주요 도로나 주거용 용도지역 또는 주거용 개발계획 부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차폐해야 한다.

(1) 주거용 용도지역 또는 주거용 개발계획 부지와 마주 보는 쪽에 높이 10피트의 불투명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2) 설계시공 표준 매뉴얼의 기타 모든 완충구역 및 조경 요건도 계속 적용된다.

(G)카운티 등록 사적지인 머내서스 전장공원과 마주 보는 건물 입면. 머내서스 전장공원과 마주 보는 건물 입면 중 머내서스 전장 경관 보존 연구에서 지정한 주요 조망 지점에서 보이는 입면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짙은 녹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마감해야 한다. 계획국장은 다른 색상이 건물 입면을 주변 수목과 조화롭게 만드는 자연색 계열임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색상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2-509.03조 별도 사용 허가 없이 허용되는 용도

1. 기존 용도지역에서 별도 사용 허가 없이 허용되는 모든 비데이터센터 용도는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에서도 허용된다.

2.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 내 다음 용도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저층 업무시설 용도지역(O(L))
고층 업무시설 용도지역(O(H))
중층 업무시설 용도지역(O(M))
업무·복합활용 용도지역(O(F))
중공업 용도지역(M-1)
경공업 용도지역(M-2)
산업·교통 용도지역(M/T)
또한 계획상업지구(PBD)와 계획복합지구(PMD) 내에서 업무시설 또는 산업시설 용도로 지정된 구획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된다.

제32-509.04조 부수적 용도

기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부수적 용도는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에서도 허용된다.

제32-509.05조 특별 사용 허가를 통해 허용되는 용도

1. 기존 용도지역에서 특별 사용 허가를 통해 허용되는 모든 비데이터센터 용도는 데이터센터 기회구역 중첩 용도지역에서도 특별 사용 허가를 통해 허용된다.

2. 카운티 조례 제32-509.0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센터는 일반 상업 용도지역(B-1), 저층 업무시설 용도지역(O(L)), 고층 업무시설 용도지역(O(H)), 중층 업무시설 용도지역(O(M)), 업무·복합활용 용도지역(O(F)), 중공업 용도지역(M-1), 경공업 용도지역(M-2), 산업·교통 용도지역(M/T)을 비롯해 계획상업지구(PBD) 및 계획복합지구(PMD) 내 업무시설 또는 산업시설 용도로 지정된 구획에서 특별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32-509.06조 설치 금지 용도지역

다음 용도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설치를 금지한다.

농업 용도지역
주거 용도지역
계획복합주거지구(PMR)
근린 상업 용도지역(B-2)
편의 상업 용도지역(B-3)
빌리지 용도지역(V)

【자료 출처 :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스윌리엄카운티】

3 [미국 메릴랜드주 칼버트카운티] - CODE OF CALVERT COUNTY ZONING ORDINANCE

◇ 번역문

제18절 토지이용 용도

제18-11조 산업용도

각 용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8절의 용도표에서 “C” 또는 “SC”로 표시된 용도에 적용되는 조건은 해당 용도의 정의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F. 데이터센터

통합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캠퍼스 형태로 배치되며,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관리·처리·전송 업무를 수행하고, 디지털 데이터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서버, 기기 및 기타 관련 구성요소를 수용하는 사업장, 시설, 단일 건물 또는 일련의 건물을 말한다. 해당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데이터센터는 모든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200피트,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유효한 주거용 건축허가가 발급된 모든 필지 또는 토지 구획으로부터 최소 400피트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한 인접 부동산은 예외로 한다.

2. 건물의 주요 입면에는 다음 요소 중 최소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한다.
a. 창호 설치
b. 연속적이고 끊김이 없는 평면을 피하기 위한 건물 입면의 요철 처리
c. 건축 자재·패턴·질감·색상의 변화나 강조 자재 사용

3. 부속 기계설비를 포함하여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은 칼버트카운티 조례 제80장 소음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4. 신청인은 해당 계획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제안된 선거구에서 최소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민설명회는 해당 선거구의 커뮤니티센터 또는 선거구 내 다른 적절한 시설에서 개최해야 한다. 주민설명회 개최 사실은 카운티 내에서 널리 유통되는 신문에 최소 2주 연속으로 주 1회씩 공고해야 한다. 최초 공고는 주민설명회 개최일보다 30일 이상 이르게 게재해서는 안 된다. 각 주민설명회에는 주민이 등록할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참석을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은 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주민설명회의 참석자 명부와 회의록을 계획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 출처 : 미국 메릴랜드주 칼버트카운티】

주요 판례

[대법원]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

◇ 주요내용

【사 건】 2024다32159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23. 선고 2023나13940 판결
【판결선고】 2026. 9. 10.

○ 판시사항

-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사건 개요

- 이 사건의 원고는 A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노선을 인가받아 시외버스 운행을 해왔는데 피고는 자신이 인가받은 노선에는 A지역이 경유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A지역을 경유하면서 시외버스를 운행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A지역을 경유하여 운행한 행위가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바 없고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한 바 없으며 피고의 경유 운행이 A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경유 운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으므로 인가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같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보아야 하고, 여객운송시장은 면허 또는 인가라는 제도적 장벽 아래 형성되는 제한경쟁시장 또는 독과점시장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되는데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일정한 정도의 배타성과 공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이나 계약상 이익과 비교할 때 훨씬 공고한 법률상 이익이며, 비록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잠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경유 운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피고 행위의 특성 및 피고의 인식 내지 의사, 원고의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ㅇ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ㅇ 판결 요지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여 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판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자료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연번	질의기관	질의내용	회신일
1	서울특별시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26.10.6.
2	경상남도 창녕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	’26.10.14.
3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26.10.12.
4	충청북도 청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26.10.8.
5	충청남도 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26.10.13.

1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안건번호 : 의견26-0297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2026. 10. 6.]

◇ 질의요지

가.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시장이 실시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매년 에너지 원단위 또는 에너지사용량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시장이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각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촉진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치로 절감되는 에너지사용료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나, 다 및 라에 대한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3. 5. 의견제시 26-0005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에서는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는 지역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대상으로 “공동주택등”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등과 같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조례에서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 임대주택 등 여러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정의하려는 대상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용어를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별도로 인용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목에 따른 아파트(제1호), 연립주택(제2호), 다세대주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각 유형별로 층수와 면적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는 준주택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으면서도 공동주택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종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등”을 정의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을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시설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주민이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주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관리체계를 갖춘 시설까지 포함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면,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개념 등을 활용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한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이하 “서울시조례”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제1호)과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안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에너지원단위 또는 에너지사용량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과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의 참여·협력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서울시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이나 그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조례안 제9조제3항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민간부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평가를 강제하려는 취지라면,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20 참조).

그러나, 상위법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시계획과 시행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에너지사용자나 공급자에게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사용량 또는 절감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민간부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서는 에너지사용자 등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그 목표와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 민간부문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료를 제출받거나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평가를 강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실적과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개선은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법」 제4조제2항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안 제12조의2제1항과 같이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시설·설비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공동주택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9. 12. 12. 해석례 19-0604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1. 19. 의견제시 25-0402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각각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의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과 관련 법령에 맞게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치로 절감되는 에너지사용료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을 의무화하거나

특정방식의 사업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은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에게 사업을 지원하거나 특정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민간 사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3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제1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각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98호)」 제3조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제1호)과 절약시설설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등을 활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은 관계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은 관리주체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리주체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이의 계약관계에 새로운 권리·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사업 중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방식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민간의 사업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할 것인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사업비 상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이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방식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민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③ (생 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6. (생 략)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12. (생 략)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 28. (생 략)

29. “관리주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 13. (생 략)

14. 업무시설

15. ~ 29. (생 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⑫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 13. (생 략)

14. 업무시설

가. (생 략)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 29.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

[안건번호 : 의견26-0282 /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회신일자 2026. 10. 14.]

◇ 질의요지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자 「자연유산법」에 따른 보호구역인 우포늪의 보전을 위하여, 우포늪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창녕군조례안”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포늪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2. 11. 의견제시 26-0019 참조).

한편,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제1호),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제한과 예외적인 가능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습지보호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지는 「습지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고,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창녕군조례안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우포늪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군계획위원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제1호), 배수체계 변경이 우포늪의 수위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제2호)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예외사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는 경우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법령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이격거리의 대상과 범위를 모두 법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바, 이는 종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였던 이격거리가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이격거리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26. 2. 11. 의견제시 26-0019 참조), 창녕군조례안 제18조의2제3항이 우포늪 인근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면,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법령과 우포늪(각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524호, 2011.01.13.),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1999.08.09.))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우포늪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보호구역이자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나, 재생에너지법령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 적용을 허용하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녕군조례안 제18조의2제3항이 우포늪이라는 특정 지역의 보전을 이유로, 재생에너지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우포늪 경계로부터 1,000미터라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면, 이는 재생에너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의 범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창녕군조례안 제18조의2제3항이 종전 조례와 동일하게 우포늪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실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우포늪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설치를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위원회 심의 관련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조례상 이격거리 규제를 심의절차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우포늪 경계로부터 1,000미터라는 이격거리 제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거리를 군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③ (생 략)

④ ~ ⑥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④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생 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 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 마. (생 략)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생 략)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 ⑦ (생 략)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생 략)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나.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3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건번호 : 의견26-0254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회신일자 2026. 10. 12.]

◇ 질의요지

가.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재위탁”의 정의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위탁”의 의미에 맞춰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중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재위탁”의 정의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중구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기존 조례상 "민간위탁"의 정의에 "재위탁"의 의미를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제2조제1호 규정의 후단에 "이 경우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탁"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보면, 최초 위탁이 아닌 기존에 위탁하던 사무를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구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해당 사무를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수탁기관이 기존 기관인지 새로운 기관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중구조례안 제2조제1호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의미와 맞지 않은 것은 아니나, 중구조례안과 같이 "민간위탁"의 정의에 최초 위탁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열거하는 것은 기존 정의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의 정의를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구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재위탁"이란 민간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위임위탁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위탁"은 민간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동일한 사무를 다시 민간에 맡기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규정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해당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 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을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한 수탁자가 해당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권한의 위임·위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하게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20. 해석례 16-0131 참조).

그렇다면, 법령상 근거가 없이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개별 법령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 재위탁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는 점, 중구조례안에서는 정의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서 제2조제4호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재위탁”을 정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질의와 같은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례입안 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구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에는 최초 위탁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중구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여, 기존 조례상 “재위탁”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재계약의 경우에 한해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거나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달리 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54 참조).

다만, 중구조례안 제2조제1호와 같이 “민간위탁” 정의에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 부분이 수탁기관의 선정까지 중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9. 의견제시 25-0409 참조). 따라서, 수탁기관의 선정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를 의회가 사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구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서 민간위탁 사무명(제1호),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제2호), 사무내용(제3호) 및 시설의 개요(제4호), 위탁기간(제5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제6호), 수탁자 선정방식(제7호) 등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제7호)’과 재계약 경우에 한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제9호)’를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위탁 시에 수탁기관의 선정 자체는 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9. 의견제시 25-0409 참조).

따라서, 중구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의 개정 취지가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의미라면, 그러한 취지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안건번호 : 의견26-0308 / 요청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회신일자 2026. 10. 8]

◇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같은 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제1호),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8호) 등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공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수의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특혜 또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의견제시 26-0207 참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는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것은 단순히 재산의 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는 사업의 내용 및 성격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가 포함될 수 있고, “공익사업” 또한 그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비영리법인·단체가 어떠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것인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범위과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사회 발전, 주민 안전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8조에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의 요건, 적용대상 및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는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와 위임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조례에서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안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 9. 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26-0258 / 요청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 회신일자 2026. 10. 13.]

◇ 질의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의 정원, 위원의 구성 비율 및 위원장의 선임 방법(제1항 및 별표 2),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제2항), 지원협의체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요건(제3항 및 제4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태안군각종위원회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2항에서는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되,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연임의 횟수나 연속한 재임기간 등에 대해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그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대해 직접 규율하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과 다르게 조례로 위원의 연임 횟수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9. 20. 의견제시 12-0290 참조).

아울러, 태안군각종위원회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임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태안군각종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이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태안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월간 입법동향

❑ 발행월 : 2026년 11월

❑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법 제 과 장 박 경 순
법제운영팀장 김 정 근
주 무 관 윤 지 수
주 무 관 이 규 종
입 법 조 사 관 황 대 석
입 법 조 사 관 이 상 민

❑ 연락처 : 031-8008-7298 (fax.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